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6 선고 2015나35798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항소인 신용보증기금

피고, 피항소인 C

변 론 종결 2015. 9. 11.

판결 선고 2015. 10. 6.

제 1 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8. 선고 2014가단5261044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지분 2분의 1에 관하여 제1심 공동피고 B와 피고 사이에 2014. 6. 13. 체결된 매매계약은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B에게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2014. 6. 20. 접수 제8012호로 마친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의 가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 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B는 원고의 위 대위변제일 2014. 5. 30. 이후인 2014. 6. 20.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중 지분 2분의 1에 관하여 2014. 6. 13.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위 2014. 6. 13.자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따라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지분 2분의 1에 관한 실제 매매일자는 2011. 11. 21.경이다. 피고와 B 간의 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아니다.

나. 판단

(1)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을나 제1, 2호증, 을다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D은 2011. 11. 21.경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지분 2분의 1을 25,000,000원에 매수하였고 이에 기하여 그 처인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B는 2006. 10. 16. 부산 부산진구 F아파트 103동 908호에 전입하였고, D과 그의 처 피고는

2008. 11. 10.경 위 같은 동 610호에 전입하였다.

(나) D과 B는 위 아파트 같은동에 거주하던 중 2010. 6. 21.경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50,000,000원에 공동매수하였다. D과 B는 위 매매대금에 관하여 이 사건부동산에 관한 채권자 밀양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근저당채무 25,000,000원(채권최고액33,000,000원, 채무자 E)을 공동으로 인수하고, 나머지 25,000,000원은 각자 12,500,000원씩 부담하여 지급하였다.

D과 B는 2010. 7. 1.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지분 2분의 1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D은 2011. 8. 11. 밀양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근저당채무 중 B가 인수한 부분까지도 이를 모두 인수하고 2011. 8. 12. 위 근저당채무의 채무자를 E에서 D 단독명의로 변경하였다. D은 그 무렵부터 2014. 10. 20.까지 위 근저당채무의 이자를 납입하였다.

(라) B는 2011. 4. 20. 위 아파트에서 전출하여 서울 강서구 G아파트 406동802호로 전입하였다.

D은 2011. 11. 21. B의 하나은행 예금계좌(H)로 12,500,000원을지급하였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2. 3. 29. B의 연대보증 하에 주식회사 A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D이 B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지분 2분의 1을 매수한 시점이 위 연대보증약정 및 신용보증약정의 체결일보다 이전인 2011. 11. 21.경인 이상,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한숙희, 판사 김은구, 판사 최종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가. 경상남도 합천군 전 3,047㎡

나. 경상남도 합천군 임야 893㎡

